##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0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고동진·주호영·엄태영

박정훈 • 조지연 • 박준태

김성원 • 박덕흠 • 박충권

서일준 • 이달희 • 박성훈

강대식 · 서명옥 의원

(14인)

#### 제안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 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61건의 승인 건수 및 1.8조원 이상의 매출·투자 성과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고 규제 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6년차를 맞이하며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감소, 규제정비 지연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 발생 가능성, 특례승인 후 행정·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실증모델 사업화의 어려움, 특례범위 이외의 제품 판매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백 등 한계점 또한 발견됨.

따라서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프로세스를 개편,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시장·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용하여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 나.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 다.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방식·형태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안 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일 괄적인 2년 부여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안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 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임시허가가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 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과장·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7항및 제10조의7제1항).
-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수·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

페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 신설, 안 제39조제1항제3호).

- 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설).
- 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 카.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허가등의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0조의5제8항 및 제10조의6제15항).
- 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말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로, "위원이"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 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

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신산업을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6항, 제7항 및 제8 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 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10항 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를 "제13항까지와"로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①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가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제7항(종전의 제6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한다.

-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 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⑨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 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의5제8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신산업을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제10조의6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 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한 허 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6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9항에 따른"을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로, "법령 정비에 착수"를 "법령을 정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마련된"을 "정비된"으로 하고, 같 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6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8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7항"으로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의6제7항"을 "제10조의6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 다.

제18조제2항 중 "과제"를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연구개발
- 2.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 3. 그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의2,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정

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자(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4제7항"을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이"를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규
	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말한다.
<u>7</u> . ~ <u>9</u> . (생 략)	<u>8</u> . ~ <u>10</u> . (현행 제7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
칙) ① (생 략)	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②
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u>강구</u>	<u>강구</u>
<u>하여야</u> 한다.	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
	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
	<u>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u>
	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원회) ① ~ ⑤ (생 략)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⑦ ~ ⑨ (생 략)

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 · 조정 · 처리하거나 위원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위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 사람이 ----.

- ⑦ ~ ⑨ (현행과 같음)
-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 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 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 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 관의 조정
  -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

① (생략)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 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② ~ ⑦ (생 략) <u><신 설></u>

적인	수행	· ス	원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실증	등을 위한	규제특례)
-----------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 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u>8</u>	ᄾ	난업	통신	사	-원	부기	상관	은	<u>ス</u>	116
항	및	제	7항	의	심:	의	. 조	:정	결	과
에	따	라	산업	용	합	신	제	품 •	서	月
<u></u>	케	대	하여	7	제-	특권	ᅨ를	- 부	여	하
œं (	<b>)</b> }	한 <sup>*</sup>	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제8</u> 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 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이내로 단축
-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u>⑨</u> <u>제6</u>
<u>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u>
<u>.</u>
<u>⑩</u> <u>제9항</u>

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①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 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①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u>&lt;삭 제&gt;</u>
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
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한다. 다만, 위원회
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
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
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제9항

- ① (생략)
- (4)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 항 및 제13항과 관련된 세부사 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② (생 략)

- ③·4) 삭 제
-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 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④ 제13항까지와

(1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3제 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를 부여한 경우 규제특례 기 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 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에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 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 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①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
1. ~ 3. (현행과 같음)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 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 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 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 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
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 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 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 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
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 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 · 과장 · 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 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 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
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 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
<u>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u>
된 바비스크 호기 코그리트
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u>경우</u>
 ⑧ 제7항
·
⑨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
품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 설>

<신 설>

8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u>제7</u>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조건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구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사항을 변경 또는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12</u>	 <u>제11</u>
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저의 연장 등) ① ~ ⑦ (생 략)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 ⑨ ~ ⑪ (생 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 전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연장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0조의3제9항
<u>다만, 정</u>
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
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
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
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 ~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있다. <후단 신설>

1.·2. (생략) ② ~ ⑥ (생략) <신 설>

-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 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신산업을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 허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 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 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 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이내로 단축
-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 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 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 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 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 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 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 설>

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 건을 붙일 수 있다. 및 제7항<u>제2호----</u>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 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한다. 다만, 위원회 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 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 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

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 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 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 • 서 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 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①·① (생 략)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 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 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 합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 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 ① · ② (현행 제10항 및 제11항 과 같음)
- ① ----- 제8항 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 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
  - ----- 법령을 정비----------. 다만, 해당 법령 정비 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 ③ (생략)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이 <u>마련된</u>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현행 제13항과 같음)
<u>15</u>
<u>정비된</u>
<u>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u>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
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
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
<u>로 본다.</u>
<u>⑥</u>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
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
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
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
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
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신 설>

⑤ 제1항부터 <u>제14항</u>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제10조의6제7항</u>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u> </u>
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
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
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
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
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u>야 한다.</u>
<u>⑱ 제17항</u>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제10조의
6제8항
1. • 2. (현행과 같음)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하 사하으 벼겨 또는 최소하 때

<신 설>

② (생략) <신 설>

③ (생 략)

- 성화 등) ① (생 략)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②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 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 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 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 시·광고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중인 제 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 은 자에게 회수 • 폐기명령을 내 릴 수 있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 성화 등) ① (현행과 같음)

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를 받은 사업--- 다음 각 호의 비용---.

- 1. 연구개발
- 2.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 원
- 3. 그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 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 지)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 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 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 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신 설> 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하여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39조(과태료) ① -----

을 지급할 수 있다.

\_\_\_\_\_

\_\_\_\_\_

한다.

-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 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 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 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 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 공 등을 한 자
-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판매 •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 4. 5. (생략)
- ② (생략)

1	
자(연장된 유효기간여	] 대하여
<u>도 같다)</u>	
	11103

- 2. 제10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2.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 의7제2항-- 규제특례 또는 임 시허가가 -----
- 3.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 7제3항에 따른 회수 · 폐기명 령을 위반한 자
  - 4.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